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조직 개편에 관한 교직원 및 학생의 의견 수렴 근거 마련〉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466호)

2026. 4.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문수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30.
3. 회부연월일 : 2026. 2. 0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 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되면서 대학의 구조개편이 증가하는 추세로 학교 및 학부·학과의 통폐합 사례가 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대학평의회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로는 개편의 당사자인 교직원과 학생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통폐합 및 학부·학과의 신설, 통합, 폐지 등 조직의 개편을 위하여 학칙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교직원 및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대학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교의 통폐합 또는 학부·학과의 신설, 통합, 폐지 등 조직의 개편을 위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교직원 및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19조의4(조직 개편 등에 관한 의견 수렴) ① 학교의 통폐합 또는 학부·학과의 신설, 통합, 폐지 등 조직의 개편을 위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직원 및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의 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학령인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30년 대학교 학령인구(18~21세)는 2020년 241만명 대비 78.0% 수준인 18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¹⁾

1)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는 2020년 272만명 대비 58.8% 수준인 160만 명, 중학교 학령인구(12~14세)는 2020년 136만명 대비 84.6% 수준인 115만 명, 고등학교 학령인구(15~17세)는 2020년 139만명 대비 95.7% 수준인 133만 명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학령인구의 감소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학과 통폐합, 대학 간 통합, 정원 감축 등 대학의 구조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실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공립대의 경우에는 2026년에만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가 강원대로,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공립)는 국립목포대로,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남해대(공립)는 국립창원대로 통합하였으며, 사립대의 경우에도 원광대와 원광보건대가 원광대로 통합하였음.²⁾

- 그러나 학교의 통폐합 또는 학부·학과의 통합, 폐지 등 조직 개편이 **교직원,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추진됨에 따라 학내 반발을 불러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충남대와 한밭대의 학교통합은 내부 구성원의 동의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양 대학의 총장간 대학통합 논의를 시작해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였고, 결국 **2024년** 양 대학간 학교통합이 무산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음.

- 이에 개정안은 학교의 통폐합 및 학부·학과의 신설, 통합, 폐지 등 조직의 개편을 위하여 학칙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교직원 및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대학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음.

2) <참고 1. 대학 통폐합 현황> 참조

□ 현행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 때 대학평의원회의 평의원인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은 해당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현행법은 학내 구성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³⁾

현행법이 학내 구성원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이들에게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등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된 의사 결정에 따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로 의견수렴의 단계를 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화여대, 포항공대 등 개별대학에서도 학칙 제·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를 통한 구성원 참여가 이미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법령 또는 규정으로 의무화할 경우 절차의 중복 및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3)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교육부는 법률이 특정 사안에 대해 사전 의견 수렴이 가능함을 명시하게 되면 대학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절차적 영역이 점차 축소되고 향후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법률 차원의 절차 규정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

참고 1

대학 통폐합 현황

□ 국공립대학 통폐합 현황(2001년 이후)

연 도	통합 전	통합 후	유 형
2001	공주대+공주문화대	공주대	일반+전문 → 일반
2005	공주대+천안공대	공주대	일반+전문 → 일반
2006	부산대+밀양대	부산대	일반+산업 → 일반
	전남대+여수대	전남대	일반+일반 → 일반
	강원대+삼척대	강원대	일반+산업 → 일반
	충주대+청주과학대	충주대	산업+전문 → 산업
2008	경북대+상주대	경북대	일반+산업 → 일반
	전북대+익산대	전북대	일반+전문 → 일반
	제주대+제주교대	제주대	일반+교육 → 일반
2009	강릉대+원주대	강릉원주대	일반+전문 → 일반
2012	충주대+한국철도대	한국교통대	일반+전문 → 일반
2021	경상대+경남과기대	경상국립대 (‘19~‘20 연합)	일반+일반 → 일반
2023	한경대+한국복지대	한경국립대	일반+전문 → 일반
2025	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공립)	국립경국대	일반+전문 → 일반
2026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	강원대	일반+일반 → 일반
2026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공립)	국립목포대	일반+전문 → 일반
2026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남해대(공립)	국립창원대	일반+전문 → 일반
2027 (예정)	부산대+부산교대	부산대	일반+교육 → 일반

□ 사립대학 통폐합 현황(2005년 이후)

연도	통합 전	통합 후	유형
2006	가천의대+가천길대	가천의대	일반+전문 → 일반
2006	고려대+고려대병설보건대	고려대	일반+전문 → 일반
2006	삼육대+삼육의명대	삼육대	일반+전문 → 일반
2006	동명정보대+동명대	동명대	일반+전문 → 일반
2007	경원대+경원전문대	경원대	일반+전문 → 일반
2007	을지의대+서울보건대	을지대	일반+전문 → 일반
2009	우송대+우송공업대	우송대	일반+전문 → 일반
2012	가천의과학대+경원대	가천대	일반+일반 → 일반
2012	탐라대+제주산업정보대	제주국제대	일반+전문 → 일반
2012	중앙대 본교+분교+ 적십자간호대	중앙대	일반+전문 → 일반
2012	경희대 본교+분교	경희대	일반+일반 → 일반
2013	경동대+동우대	경동대	일반+전문 → 일반
2014	한국외대 본교+분교	한국외대	일반+일반 → 일반
2014	한북대+신흥대	신흥대	일반+전문 → 일반
2014	단국대 본교+분교	단국대	일반+일반 → 일반
2020	상지대+상지영서대	상지대	일반+전문 → 일반
2024	경주대+서라벌대	신경주대	일반+전문 → 일반
2026	원광대+원광보건대	원광대	일반+전문 → 일반